

(사)대한스포츠홀덤협회 회원사 운영 지침

- 가. 모든 경기는 협회에서 선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.
- 나. 모든 경기는 시드권으로 참가비 및 상금을 집행한다.
- 다. 부득이한 경우 현금 및 카드로 참가비를 결제할 수 있다.
- 라. 상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회원사 대표와 고객은 다음 사항에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① 상금지급 절차는 대한스포츠홀덤협회 위임한다.
 - ② 협회는 상금업무에 관한 수상자(선수) 개인정보를 취급, 조회, 저장 한다.(개인정보 취급기한 1년)
 - ③ 협회는 수상자(선수) 개인정보를 타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다.
 - ④ 협회에서 상금 위임하는 경우 위임 수수료 1% 는 회원사에서 부담한다.
 - ⑤ 협회는 상금지급 대행하며 상금 수상자에게 4.4% 세금공제 후 수장자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하며 지급된 상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익월 10일 협회 세무대행사무소에서 원천세 신고과 세금을 납부한다.
 - ⑥ 상금 수상자 작성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오기, 허위기개 등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.
 - ① 협회는 상금 대상자의 동의하 경기개최 등 기타 안내사항을 발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(본인 요청 시 개인정보를 삭제 한다.)
 - ⑧ 회원사가 입금한 상금과 대행 수수료 대하여 협회는 매월말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회원사 또는 개인에게 발급한다.
- 마. 회원사는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만 할 수 있으며 병행 불가 바. 상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
 - ① 상금 지급은 협회 사무국 근무시간 기준 09:00 ~ 16:00까지 입금된 상금에 대하여 당일 지급하며 16:00 이후 입금분은 익일 지급한다.



- ② 협회 사무국 주말(토/일), 법정공유일, 임시공휴일 상금 지급은 휴일 다음날 일괄 지급한다.
- 사. 회원사 제명 또는 영업 제한 안내
 - ① 협회 승인 없는 경기를 진행 한 경우
 - ② 협회 승인 없거나 허가 받지 못한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
 - ③ 불법적으로 현장에서 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
 - ④ 연회비 납부기한 3개월이 경과한 경우
 - ⑤ 이외 불법 영업으로 협회 이미지 실추하는 경우

"위 사항으로 회원사 제명 시 납부한 연회비 반환되지 않으며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."

본 지침의 시행은 2023.07.24.부터 적용한다.

사단법인 대한스포츠홀덤협회 회

